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9-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위기 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 지역³²⁴⁾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³²⁵⁾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32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2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임원³²⁶⁾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³²⁷⁾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³²⁸⁾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유의사항

-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3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328)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24년	2025년
매출액	1,000,000,000원	850,000,000원
상시근로자수	5명	5명
1인당 임금총액	24,200,000원	21,600,000원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11,000시간	9,000시간
소득금액	100,000,000원	85,000,000원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11,000원	12,000원

A. 세무사 답변

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로 절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 1,907,500원

$$\textcircled{1} : (24,200,000 - 21,600,000) \times 5 \times 10\% = 1,300,000\text{원}$$

$$\textcircled{2} : (12,000 - 11,000 \times 105\%) \times 9,000 \times 15\% = 607,500\text{원}$$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2 과세연도		2025년 1 월 1 일부터 2025년 12 월 31 일까지	
3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⑨-⑫)×⑪×10% + (⑮-⑱×105%)×⑭×15%]			1,907,50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121,000,000	5	24,200,00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108,000,000	5	21,600,000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108,000,000	9,000	12,000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121,000,000	11,000	11,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3 월 31 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2025.01.01.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2025.12. 31.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직전연도 대비 상사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 2	전환인원수 × 중소기업(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13,000,000×10/100 + 4,050,000×15/100	1,907,5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제3항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 50%	18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이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2 과세연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근거법령	코드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13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4 제17항	14Y			
13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5 제11항	18A			
13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7 제10항	18F			
134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 3 제3항	18K		1,907,500	1,907,500
135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2 제3항	14H			
13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4 제5항	14Q			
137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4 제5항	18G			
153 세액공제 합계		1A3		1,907,500	1,907,500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이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Q. 질문 2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³²⁹⁾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³³⁰⁾

329) 원천세과 71 2010.1.22.

330) 원천 250 2009.03.27. 원천세과 71 2010.1.22.